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1. 19.

김남근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 2024. 11.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2회 국회(임시회)

- 제2차 정무위원회(2025. 2.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1.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1차 정무위원회(2025. 11.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남근의원)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가스비, 운송비 등은 연동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에너지비용, 운송비 등은 원재료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변동되며, 물품 등의 제조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결정 요소임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에 대해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함. 이에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원재료등’으로 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항·제17항).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납품대금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급사업

자에게 납품대금연동을 배제하는 합의를 강요하거나, 쪼개기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단가계약 등으로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어렵게 도입된 납품대금연동제 확산이 늦어지고 있음.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하고(안 제3조제4항제4호),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위탁시점)에 하도급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도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시점부터 연동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4항제3호).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과 하도급대금에 대한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안 제3조제5항제1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미연동을 요구·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3조제5항제2호).

다음으로, 현대중공업 불공정 하도급 사건과 같이 조선, 건설 등에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단가와 계산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제공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공수'를 책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하도급대금을 삭감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계약 서면에 단순히 하도급대금만 기재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 단가, 목적물등의 종류, 물량 상세내역 및 생산성등의 지수 등 기타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사항과,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1호).

나아가,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금 보다 부당하게 낮게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판단할 때 일반적 거래에서 사용되는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추정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또한, 현행법은 원사업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기술탈취 등 피해기업들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또는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술탈취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원

사업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3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황 승 기)

1.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의의와 도입 경과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또는 용역 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임.

□ 현행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한 하도급거래임.[1)]

-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 다만,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하도금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법 제2조제16항),

- 즉,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임(법 제2조제17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수탁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해 지난 2023년 법제화한 것으로서 하도급 거래에서의 비용 상승 위험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2025년 2월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을 제정하였음.

□ 개정안들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이인영 의원안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노무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김남근 의원안은 주요 원재료와 에너지 비용 및 운송비를

포괄하는 ‘주요 원재료등’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하는 입법방식을 취함.

□ 2023년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였을 때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법 적용 대상인 원재료의 정의와 그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연동제의 적용대상을 원재료에 국한하는 안, 원재료에 노무비 변화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로 확대하는 안 등이 논의되었고, 후자의 경우 오히려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 노출 등을 우려로 원재료로 한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부 지침에서 이를 최대한 넓게 해석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음.

- 둘째, 제도 도입의 당위성으로서 원가변동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대행하는 대행 협상제(제16조의2제2항)가 유명무실하여 국가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라는 입법의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당위성에 관한 위원들의 논의가 있었음.

- 셋째, 원재료 가격의 변동 수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리보장 및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10% 이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 넷째,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제외에 관한 문제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합의로 적용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과 함께 개별 계약의 특수성과 일률적인 법 적용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마련한 적용 배제 기준을 원사업자가 악용할 가능성에 관한 우려에 관해 논의하였음.

- 마지막으로, 협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연동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성실히 협의하도록 입법하였음.

2.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의 확대(이인영·김남근 의원안)

□ 개정안들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인영 의원안은 노무비를, 김남근 의원안은 운송비와 에너지(석유·가스·석탄 등 연료, 열, 전기를 말함) 비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이인영 의원안	김남근 의원안
제2조(정의) ① ~ ⑮ (생 략)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⑮ (현행과 같음) ⑯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① ~ ⑮ (현행과 같음) ⑯ ----------주요 원재료, 운송비, 「에너지법」 제2조의 에너지(이하 "주요 원재료등"이라 한다)"----------원재료등으로서----------원재료등을-------.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⑰ ----------	⑰ ----------원재료등의-

현 행	이인영 의원안	김남근 의원안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 또는 노무비가----------.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 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 행	이인영 의원안	김남근 의원안
다. 1.·2. (생 략)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생 략) ③ ~ ⑫ (생 략)	----. 1.·2. (생 략) 3. ----------주요 원재료, 노무비,---------- 4.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 1.·2. (생 략) 3. ----------주요 원재료등---------- 4.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 개정안들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우선 가격변동의 예측 가능성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취지는 원재료 가격의 예상치 못한 급등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노무비(이인영 의원안)나 운송비 및 에너지비용(김남근 의원안)을 추가할 필요에 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전기·가스요금 등은 그 결정 과정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에 따라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요금이 결정·조정되고, 운송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2호[3]에 따라 고시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기초로 그 운임이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에 따른 월 단위 차주원가>

(단위: 원)

품목	고정원가[1]	변동원가[2]	합계
철강재	2,816,465	4,645,565	7,462,030
1톤 일반형 화물차	885,970	990,701	1,876,671
5톤 일반형 화물차	1,376,378	2,310,314	3,686,692
12톤 일반형 화물차	2,310,980	3,698,103	600,083
25톤 일반형 화물차	2,618,685	5,043,930	7,662,615

1)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단체・협회비,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2) (변동원가항목) 유류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 또한, 시장실패에 대한 국가 개입 범위의 문제로서 적용대상의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확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사적계약에 기반을 둔 거래 관계에 대하여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 조정과 변경을 강제하는 '사적자치 원칙'의 예외라는 점과 함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이미 발의되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4]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들의 취지는 동의하나, 적용 대상의 확대를 비롯한 개정안들의 주요 쟁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의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에 관한 충분한 진단을 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을 포함시키는 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202055),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을 포함시키는 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2203798)

3. 하도급대금 산정 세부사항의 서면기재(김남근 의원안)

□ 개정안은 하도급계약에 관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인 '하도급계약의 내용'의 대표적인 예시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 단가, 목적물등의 종류, 물량 상세 내역 및 생산성등의 지수(품셈[5])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품셈을 포함) 등 하도급 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 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 단가, 목적물등의 종류, 물량 상세

현 행	개 정 안
	내역 및 생산성등의 지수(품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품셈을 포함한다) 등 기타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사항과,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4. (생 략)	2. ~4. (생 략)
③ ~ ⑫ (생 략)	③ ~ ⑫ (생 략)

□ 현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필수 서면 기재 사항으로 정함.

□ 개정안은 조선·건설 등의 산업에서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단가와 계산식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제공되지 아니하여 하도급대금이 과소하게 책정되는 관행이 지속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서면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5) 인력이나 기계로 어떤 물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단위당 노력과 능률 및 재료 등을 수량으로 나타낸 것.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구 분	현행	개정안
필수 기재 사항	○ 하도급계약의 내용 - 하도급대금 -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 하도급계약의 내용 - 하도급대금 -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 단가, 목적물등의 종류, 물량 상세내역 및 생산성 등의 지수(품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품셈을 포함한다) 등 기타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사항
위임규정	X	대통령령 위임

□ 실제로 조선업계 등을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시 그 구체적 기준이 공개되지 아니하고 이른바 '대금 후려치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6)]

-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 전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는 현행법(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공 전에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대금을 산출할 때도 일방적으로 책정하면서 품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낮추는 등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음.[7)]

□ 개정안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 단가, 목적물

6)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우조선해양에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2020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신한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다수 조선사에 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부과하였음.

7) 예컨대 조선산업의 하도급대금은 통상 "예상공수(=예상물량×품셈) × 단가"로 결정되는데, 원사업자가 품셈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지속됨.

등의 종류, 물량의 상세내역, 생산성(품셈 포함)등의 지수를 하도급계약에 대한 서면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입법형식과 관련하여 개정안처럼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사항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열거할지, 법률에서는 대강의 내용만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할지에 관하여 국회의 입법권 및 위임의 가능성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봄.

- 개정안은 예시적 사항을 법률에 자세히 열거하고 있는데 '계산식·단가·목적물등의 종류·물량 상세내역·품셈을 포함한 생산성등의 지수'와 같은 구체적·기술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봄.[8)]

다만, 이 경우 국회의 입법 의도를 반영하도록 정부의 시행령 제정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임.

8)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의견을 제시함. 한편,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경우 수정안은 아래와 같음.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경우 수정안
1.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 단가, 목적물등의 종류, 물량 상세내역 및 생산성등의 지수(품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품셈을 포함한다) 등 기타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사항과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하도급대금 및 그 산정방식,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모든 업종에 대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도록 일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하도급연동제 적용 예외 규정 개선(김남근 의원안)

□ 개정안은 ① 위탁시점에 하도급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도 일단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한 사항을 계약관련 서면에 포함하도록 하되 계약 기간 안의 총 거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② 하도급대금 미연동에 대한 합의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미연동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2. (생 략)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④ ----------. 1.·2. (현행과 같음) 3. ----------

현 행	개 정 안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단서 신설>	----------경우. 다만, 위탁시점에 하도급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면 발급 시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계약기간 안의 총 거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시점부터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서면요청으로 원사업자와----------
⑤ (생 략)	⑤ (생 략)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 ① 현행은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하도급대금 미연동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함[9].

9)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현행법에서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점(위탁 시점)에 하도급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하도급 계약체결 시점(위탁 시점)에는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물품의 단가만을 기재하고 계약하는 이른바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단가계약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함.

-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는 시점(2023년 10월)에 제도 홍보 등을 위해 발간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에서 "단가계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분쟁에 따른 책임은 원사업자에 있다"고만 안내하여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단가계약이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음.

□ 개정안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하도급 계약체결 시점(위탁 시점)에 하도급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임.

---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제3조 제2항제3호의 사항(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10)]

공정거래위원회도 단가계약의 경우 향후 총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고, 개정안에 따르면 오히려 최종 금액이 1억원 이하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사전에는 기준 지표나 산식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의무가 될 수 있고 실무상 집행이 어렵다는 의견임.

□ ② 현행 제3조제4항제4호는 하도급거래의 양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예외 규정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획일적인 적용이 오히려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해칠 가능성을 염두한 제도이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하도급 거래 관계상

10) 현행법상 제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법 제30조의2제5항제1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 미연동을 수급사업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연동 미실시 합의 강요 등을 통한 의무 회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 그러나 개정안대로 입법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전히 합의를 강요할 수 있음. 예컨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후 그 형식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미연동 요청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게 한다면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침해는 방지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11)]

11)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함.

5. 거래상 지위 남용 및 탈법행위의 행위태양 명확화(김남근 의원안)

□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면의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④ (생 략)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④ (생 략) ⑤ ----------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 동일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하도급거래의 기간이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

현 행	개 정 안
	하는 경우 나. 각 하도급대금이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2. 원사업자가 제4항4호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
<신 설>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조제5항과 제80조의2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과 탈법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12]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발생하고 있는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 동일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는 행위(이른바 ‘쪼개기 계약’),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 등[13]을 근절하려는 것으로서 법률에 거래상

12) 제30조의2(과태료) ④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12.30., 공정거래위원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연동제 기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이나, 건설업 분야에서는 9.6%로 상대적으로 높아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 남용 및 탈법행위를 구체적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음.

□ 위반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자세히 명시하는 것은 제재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범자에게 규범 준수 의지를 촉진시킴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의 유형과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고, 법률·고시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시각각 변화하는 위반행위의 양태를 법률·고시 등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아울러 법률과 고시에 규정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단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도 위반행위 유형을 법률과 고시에 열거할 경우 열거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한 원사업자의 부정한 행위는 규제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신중한 입장임.

6.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권고(이인영 의원안)

□ 개정안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등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3조의2제1항을 개정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등에게 '권고' 하도록 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권고하여야 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권장(권하여 장려함)과 권고(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의 사전적 의미의 차이가 크지 않고, 개정하더라도 여전히 수범자에게 강제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입법 실익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임.

□ 만약 개정안대로 입법화할 경우 현행 제3조의2제2항의 개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즉, 현행법 제3조의2제1항의 경우 정부가 일반적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업자등 전체에 '권장할 수' 있게 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14]에서 제3조제2항제3호[15]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16]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개정안이 권고라는 법 문언을 채택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유도하려는 취지라면 제3조의2제2항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현행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라 봄.

---

14)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15)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④ (생 략)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 3. (생 략)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7.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추정하는 요건 신설(김남근 의원안)

□ 개정안은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하도급대금 또는 일반적 하도급대금,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산정한 하도급대금 등에 비해 적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추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 ② (생 략) <신 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도급대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추정한다. 1. 해당 하도급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하도급대금 또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하도급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

현 행	개 정 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산정한 하도급 대금 3.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조등의 위탁을 수행하는 데 소요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원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이러한 거래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당해 제조등 위탁과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하도급대급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 략) <신 설>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하도급거래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하도급대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하도급금액을 뺀 금액을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

현 행	개 정 안
	조제3항에 따른 금액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하도급대금으로 추정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생 략)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정의(제4조제1항)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 8가지 유형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고 있음(제4조제2항).[17]

17)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개정안은 현행 제4조제1항의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추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의 합리적 수준을 추정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임. 개정안은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다고 하였는바 입법의 효율을 위하여 현행 예규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법률 개정 대신 예규 개정으로 갈음할지에 대한 논의를 선행할 필요가 있음.

<예규 중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에 관한 규정>

Ⅳ.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 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해당 여부 심사기준 나. 법 제4조 제1항의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은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된 대가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되는 대가를 적용한다. ① 목적물 등과 같은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② 목적물 등과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③ 종전에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가 ④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최저 수준) ⑤ 신규 개발품과 같이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제조 등의 원가에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 ⑥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는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된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 둘째, 개정안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추정하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 하도급대금 또는 일반적 하도급대금(안 제4조제3항제1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산정한 하도급대금

(안 제4조제3항제2호)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현행 규제에 포섭되지 않는지에 관한 논의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현행 제4조제2항제5호)는 개정안 제4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요건으로 하는 “정당한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현행이 개정안보다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함.

다만, 개정안 제4조제3항이 현행 제4조제2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요건이 일치하거나 현행 규제에 완전히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면, 현행이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 실익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셋째, 개정안 제4조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하도급대금”은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공정이 매우 다양하여 거래금액을 일반화하기 어렵고,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산정한 하도급대금”이나 “통상의 거래순이익률” 역시 원가 외의 대금결정 요소(예: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등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대한건설협회의 비판적 의견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특정한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추정”하도록 하는데 현행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하고 있고, 추정은 간주와 달리, 반증으로 번복이 가능하다는 점[18]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현행처럼 “간주”로 그 용어를 수정할지에 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함.

18)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152 판결

판시사항
호적부 기재가 진실하다는 추정을 다른 반증으로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동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서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2751 판결

판시사항
[1] 실종선고의 효과를 반증을 들어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8. 징벌적 손해배상액 조정(김남근 의원안)

□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3배 또는 5배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19]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 략)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③ ----------배상책임을---. ----------. 1. ----------3배 2. ----------

현 행	개 정 안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5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 현행 제35조제2항은 부당한 대금결정금지(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제10조), 감액금지(제11조), 보복조치의 금지(제19조)를 위반한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의 '3배 이내'에서, 기술자료 유용 행위 금지(제12조의3제4항)를 위반한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함.

□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3배 또는 5배로

19)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35조 제3항 :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특정화하고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이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로 인정되는 배상액이 통상 법정 상한인 3배(기술유용행위 5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전하는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를 초과하여 배상액이 정해지므로 법률에서 과다하게 규정하면 소송의 남발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또한,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있는 22개 법률에서도 개정안과 같은 입법형식을 취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 적용의 형평성과 통일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도 개별적·구체적 사항의 반영 필요성, 위반행위의 중대성·명백성, 피해액 규모, 사업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 찬성하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